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

의안 번호	2272
----------	------

2024년 11월 25일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 : 2024년 10월 16일  
다. 회부일 : 2024년 10월 18일  
라. 상정일 : 제327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
2024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 (수정안 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미래청년기획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제대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함과 더불어 기타 약칭 및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수정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24조)  
나. 약칭 추가 및 수정 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9조)

다. 위원회 분과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수정 (안 제9  
조제10항 및 제11항)

라. 예산 범위 지원 내용 명시 (안 제14조)

마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  
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9. 12. ~ 10. 2.) 결과 : 의견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조성준)

### 가.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(안 제24조)하고, 기타 약칭 및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의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
- 한편, 같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제출<sup>1)</sup>되어 심의 중임

### 나. 검토 내용

#### (1)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
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 '제대군인법)」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 개발·활용, 복무 경력 인정 및 기술 등의 사회 활용,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

####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·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,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) 의안번호 2263, 제출일 : 2024.10.16., 보건복지위원회

## (2) 신설 조문에 대한 검토 (안 제24조)

**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신설 조문의 구조와 표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# “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”

- 이번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,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을 우대하여 정책 참여 및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- 그러나 안 제24조 문장을 분석해 보면, “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”이 특례 적용 대상인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만을 지칭하는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
- 또한, 문장을 간결히 하고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이라는 용어를 같은 조례 제3조(용어의 정의)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

### “용어의 해석 및 적용”

- 안 제24조에서는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을 「제대군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며,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의 ‘군 복무기간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, 이는 용어와 해석과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

- 「제대군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를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 이 중 “보충역”과 “대체역”의 경우에는 ‘군’에서 근무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 ‘군 복무’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

###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[퇴역·면역(免役)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 사람을 말한다.
2. ~ 3. (생략)
4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
#### □ 병역의 종류

역종	현역		보충역	대체역
복무형태 (간부제외)	현역병 (육·해·공군, 해병대)	전환복무 (의무경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원)	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기사,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	병역의무자 중 「헌법」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,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

#### □ 보충역 구분에 따른 복무기관(장소), 복무방법 등

1. 사회복무요원 :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지방의료원, 사립학교, 비영리기관 등
2. 예술·체육요원 :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(봉사시간 이수)
3. 전문연구요원 :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·학문분야 종사
4. 산업기능요원 : 산업체에서 제조·생산 분야 종사

#### □ 대체역의 복무분야, 복무기관(장소) 등

1. 대체업무 :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,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
2. 복무분야 : 급식, 물품, 교정교화, 보건위생, 시설관리

※ 대체업무에 포함되서는 안되는 행위

- ① 무기·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·단속하는 행위
- ②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
-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

- 따라서 안 제24조에서 ‘군 복무기간’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, ‘군’에서 복무한 기간만 고려하는 것인지, ‘군’에서 근무하지 않은 “보충역”과 “대체역”도 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서울시는 현역,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 전부를 포함하여 상한 연장을 적용할 계획이므로, ‘군 복무기간’을 ‘복무기간’으로 수정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 “특례의 기준 및 적용대상”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에서는 시장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 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, 관련 법령인 「제대군인지원법」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에서는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연장 기준과 연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####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.

####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9조(응시연령 상한 연장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.

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3세
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2세
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1세

-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대한 판례<sup>2)</sup>를 보면, 일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과 정책 추진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함을 알 수 있음.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의 연령 상한 연장의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, 결정된 사항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
-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과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, ▲연령 상한 연장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, ▲세부 사항을 현행 조례 제9조에 규정된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·조정을 거쳐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**(3) 약칭, 용어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등)**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약칭, 용어 및 자구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‘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(법제처, 2022)’에 따라 조례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

**〈용어 및 자구 수정 관련 개정 사항 정리〉**

1. 약칭 변경 및 적용 등

- ▶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 → 이하 조항에서 “서울특별시”,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변경
- ▶ “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 → 이하 조항에서는 “법”으로 사용
- ▶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 → 약칭을 생략

2. 자구 수정 등

- ▶ “수립시” → “수립 시”, ▶ “범위 내” → “범위”, ▶ “청년 시설” → “청년시설”
- ▶ “제1항, 제1항 및 제3항” →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, ▶ “19세~39세” → “19세부터 39세”

2) [판례]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, 그러한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. [전원재판부 2010헌마328, 2012. 8. 23.]

## 다. 종합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의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시행 시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조문의 정책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, 연령 상한 연장의 적용 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, 현행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심의·조정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           락**

**6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: 없            음**

**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: 수정안 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           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           음**

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72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1월 25일  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정책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,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함

## 2. 주요내용

- '의무복무 제대군인'의 정의를 신설함 (안 제3조제8호).
- '의무복부 제대군인'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4조).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 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 조례에서 "청년"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정의) _____ _____ 뜻은 _____.</p> <p>1. "<u>청년</u>"이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"<u>의무복무 제대군인</u>"이란 「<u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청년정책 시행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이란”을 ““청년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및”을 “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는”을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서울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3항 중 “수립시”를 “수립 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은 당연직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전단 중 “분과회의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분과회의의”를 각각 “분과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, “간사를 둔다”를 “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“위원회 운영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각각 “시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”를 “법 제15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을 자격요건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전단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예산범위 내”를 “예산 범위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청년 시설”을 “청년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산평

정가격”을 “재산 평정가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19세~39세”를 “19세부터 39세”로 한다.

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 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,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「청년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시는</u>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,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</p>	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서울특별시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</p>



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  
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

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  
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  
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·②

(생략)

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기본  
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.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장

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 
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 
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  
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
심의·조정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  
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 
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시장  
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 
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 
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

-----  
-----.

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 시의 -----  
-----.

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·②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수립 시 -----.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“청년정  
책조정위원회”--.

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 
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  
다)은 -----  
-----.

무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혁신·경제·주택·복지·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·⑧ (생략)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.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-  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---  
-----  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⑨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⑩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  
----- 분과위원회---  
----- . 분과위원회의 -----  
----- 분과위원  
회의 -----.

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

⑪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  
----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⑫ 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-----  
-----.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시의 -----  
----- 법 제15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⑥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의2(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의3(청년인재추천위원회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

-----

----- 범위 -----

----- . -----

-----

----- 범위 -----

-----

-----

----- .

⑦ ----- 각호 ----- 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의 -----

-----

----- 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청년인재추천위원회) ① ----- 시의 -----

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(이하 “청년인재추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 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범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  
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) ①·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

-----.

④ -----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 -----.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범위 -----.

제16조(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청년의 건강증진)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·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자치구에서 ‘서울청년센터’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
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범위 -----  
-----.

제18조(청년의 건강증진) ① -----

----- 범위 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예산 범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
----- 청년시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~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
2. (생략)

<신설>

제24조 (생략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재산 평정가격 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.

1. ----- 19세부터 39세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25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